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0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성원 의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구조·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중)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를 한 자가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은 긴급성과 위험성이 높은 임무로서, 기상 변화, 시야 확보의 어려움, 구조 대상자의 상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행됨.

특히 구조·구급대원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요구받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구조활동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수상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구난활동의 수행체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형의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로 인해 구조·구급대원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험성과 공익성이 유사한 구조·구급활동임에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수상 수색·구조·구난활동의 긴급성·위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에 대한 형사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조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형의 감면 대상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시 또는 요청을 받거나 종사명령을 받고 수난구호 활동을 한 사람만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직무상 구조·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누구든지 형의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개정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수색·구조·구난활동 전반에 대하여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수색”은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하며, “구난”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한 활동으로서,

그 자체로 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형의 감면 규정은 구조활동과 같이 인명에 대한 직접적 처치가 수반되어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서,

신설 조항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제266조~제268조)에 대한 감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 조문의 오기로 보이고,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

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부칙의 적용례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응급의료법」과 같이 형의 감면 요건에 “고의”를 추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로 보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은 제도적·행정적 준비기간이 요구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